

# 순천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규정

제 정 1982. 3. 1  
개 정 1992. 7. 1  
전문개정 1996. 6. 24  
개 정 2007. 6. 26  
개 정 2014. 1. 20  
개 정 2015. 6. 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포상과 표창의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훈법·정부표창규정·교육부표창규정에 의한 포상 및 표창추천대상자 심사.
2. 자체 표창대상자 심사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교원공적심사위원회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 및 대학회계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직공적심사위원회로 구분하되, 각각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 1. 20, 2015.0616.)

② 교원공적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·대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과 보직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③ 일반직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·교무과장·학생지원과장·총무과장·경리과장과 기획평가과장 및 5급 이상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고, 각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) 위원 본인의 공적심사에 관하여 그 본인은 표결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6조(재심의) 총장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정부표창규정과 순천대학교 표창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간사)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각 1인을 두되, 교원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 인사업무주무가, 일반직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과 인사업무주무가 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2. 7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 6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1. 2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6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

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과 순천대학교 기성회직원 퇴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